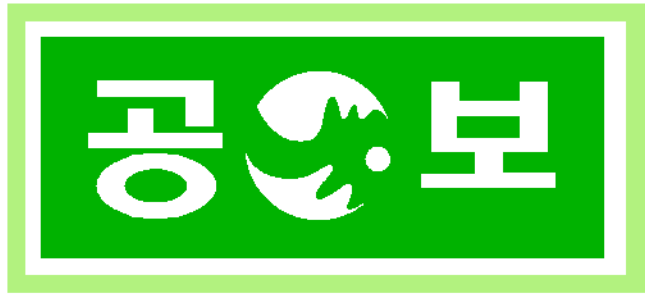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기 관 의 장	기 관 의 장



제 731 호 2011. 12. 30(금)

## 고 시

○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 2011-119호[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] .....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-119호

**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**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,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3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**I.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**

1. 설정항목

- 가.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- 나.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다. 경과년수별 진가율
- 라. 가감산특례
- 마. 증·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바.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
- 사.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
2. 세부결정사항 :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※ 2012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는 북구청 세부과에 비치.

**II.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**

1. 결정항목

- 가. 차 량
  - 1)정의 2)용이해설 3)적용요령 4)시가표준액 산출예시 5)기준가격표
- 나. 기계장비
  - 1)정의 2)종류 3)기계장비 연도별 작가율표 4)적용요령 5)산출예시 6)기준가격표

다. 선 막

- 1)정의 2)내용년수 및 감가율 3)적용요령 4)산출예시 5)기준가격
- 6)산가율표

라. 항공기

- 1)정의 2)내용년수 및 잔가율 3)적용요령 4)항공기 기준가격표

마. 시설물

- 1)용어정의 2)종류 3)내용년수 및 감가율 4)기준가격표
- 5)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

바. 특수시설물

- 1)용어정의 2)종류 3)내용년수 및 감가율 4)기준가격표
- 5)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

사. 입 목

- 1)용어정의 2)용어해설 3)종류 4)시가 조사방법
- 5)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)시가표준액 적용요령

아. 어업권

- 1)용어정의 2)종류 3)시가표준액 4)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자. 광업권

- 1)용어정의 2)광업권의 대상 3)용어해설 4)시가표준액

차. 회원권

- 1)정의 2)종류 3)시가표준액 4)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카. 지하자원

- 1)정의 2)종류 3)시가표준액 4)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타. 지하자원

- 1)용어정의 2)지하자원(광물)의 대상 3)용어해설 4)시가표준액

2. 세부결정사항 :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※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복구청 세부과에 비치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